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5 선고 2019가단103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최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수복

변 론 종 결 2020. 6. 16.

판 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상품권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9. 9. 24. C로부터 상품권을 많이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면가 100,000원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392장을 매수하여 C에게 알렸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상품권을 38,024,000원(= 392장 × 9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2019. 9. 27. C이 알려준 대로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원고 명의로 38,000,000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된 것을 확인하고 C로부터 24,000원을 지급받은 후 C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2019. 9. 27. 경찰을 사칭하는 자칭 D 등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돈이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원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B 등에게 송금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속아 송금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D 등에게 속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 C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지 않았고, 피고는 상품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C에 대하여 여전히 상품권 대금채권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금전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편취한 것이고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피고가 매도한 상품권의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위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액의 편취사실 또는 이 사건 계좌가 원고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